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32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임종성 · 강선우

박홍근 · 최혜영 · 아수진비

황운하 · 고영인 · 이성만

윤미향 · 김영호 · 안규백

송재호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 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의2 제2항). 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.

제26조의2제2항 중 "제1항에"를 "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 ①・②	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
	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
	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
	<u>한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	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
실시) ① (생 략)	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	② <u>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</u> -
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	
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	
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	
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	
있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